

[]국내
[]국외

근로자공급사업

[]신규
[]연장

허가신청서

(앞 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일자		처리기간		20일	
사업체	명칭					업종			
	전화번호					근로자 수			
	소재지								
대표자	성명					주민등록번호			
	주소					전화번호			
공급계획	국내	월간			명	연간	명		
	국외	월간			개국	명	연간	개국	명
공급대상 사업체 수									
개소									
업무구역(국내)									
지사설치 (국외)	지역					일자			
등록기준지	대표자								
	임원								

「직업안정법」 제33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·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직업안정기관의 장

특별자치도지사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신규 허가신청서 (각 1부)	1. 「직업안정법 시행령」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. 사업계획서(수입 및 지출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합니다) 3. 자산상황서 4. 사업자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)의 이력서 5.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6.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(국외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하며, 이 서류는 허가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) 7. 신청인(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)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,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「재외공관 공증법」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	수수료 없음
	연장 허가신청서 (각 1부)	1. 사업계획서(수입 및 지출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합니다) 2. 사업실적서(수입 및 지출실적 등 수지결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합니다) 3.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(국외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합니다)	

유의사항

허가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